

시간제 고용, '악용' 막을 조치 따라야

정부, 시간제 고용 촉진·갱내 여성노동 허용방침 상공부·동지부 등 관련법 정비작업에 박차

최근 정부부처에서는 여성의 유휴인력을 활용,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간제고용촉진'과 '부녀자의 갱내 단순노동 허용'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공부와 노동부는 지난 3월 14일 <제조업경쟁력 강화 대책보고회> 결정에 따라 주부나 노후장년층의 유휴인력을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고용촉진 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작업은 상공부 산업정책과, 노동부 고용대책과·근로기준과 등 근무 관련 부서에서 '검토중' 일 뿐 시간제 고용으로 초래될 많은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한편 동력자원부에서는 탄광의 극심한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녀자의 갱내 단순노동 허용여부를 놓고 관련법을 바꾸는 작업을 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검토중인 동력자원부 석탄생산과 역시 근로기준법 제58조<갱내근로금지> 조항에 '사용자는 여자와 18세 미만의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개폐할 것인지 아니면 △탄광과 같은 인력난을 겪는 일정 직종에만 단서조항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단계다.

그간 시간제고용은 전일제

노동에 참여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부나 노년층의 '여성고용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없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전반적 '고용불안정 강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게 사실이다.

단 동력자원부에서 검토중인 부녀자 갱내 단순노동 허용여부는 <갱내근로 금지>와 같은 모성보호차원의 유해노동에서의 여성보호가 역으로 여성의 직종을 제한하는 구실로 악용돼 온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모성보호의 침해 여부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여성의 <야업 금지> 조항을 악용, 여성의 관리직 배치를 제한해 왔었다.

이같은 실정으로 여성계는 현재 정부부처가 추진·검토중인 시간제고용촉진방안이나 부녀자의 갱내 단순노동 허용여부 방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동분과 정양희 간사는 "부녀자의 갱내 단순노동 허용은 모성보호 차원에서 유해노동금지에 속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직종 제한이라는 부정적 결과도 가져왔던 만큼 여성들 스스로 이를 허물되 여타 부분의 모성보호나 새로 마련될 방안이 악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침: 지난호 6면 기사중 김현자 씨의 직함을 국무총리실 여성정책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여성신문 만평 반쪽이

